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개정이유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상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고, 지적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어 변경된 개별법령 등을 조례에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적법」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산입(안 제1조)
- 다. 점용료 요율 관련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관계규정 명시(안 제8조)
- 라. 점용료 월액 납부방법 규정(안 제8조제3항)
- 마. 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를 “제23조, 제2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단위로하여”를 “단위로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법 제4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사목 중 “철도청장과”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인하여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는[별표]”를 “자는 「국유재산법」, 「지방채정법」 관계규정에 의거 별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유지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부과한다.

제8조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점용일수/365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점용료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일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년분을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점 용 대 상	점 용 요 율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 분전반,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지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 정압시설,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	〃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5. 경찰관파출소·초소 등의 표지의 설치	〃
6. 방화용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
7.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
8.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
9.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10.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
11.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
13.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 시설의 설치	면 제
14.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면 제

※ 해당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제23조, 제24조----- ----- ----- ----- -----.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생략)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생략) 2. 영 제2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나. (생략)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단위로 하여 -----

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내일 것

라. (생략)

3. ~ 6. (생략)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 6.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라.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제1항-----

-----.

5. · 6.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
----- 법 제16조-----

3. (생 략)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생 략)

②시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 바. (생 략)

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생 략)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3. (현행과 같음)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
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

아. (현행과 같음)

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일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2. <u>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년분을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등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신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숨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垓)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매수 청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
- 1의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
- 1의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5. 법 제2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반납 및 보관
6.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 유지·관리
- 6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7. 법 제70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3.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4.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제4항제1호에 따른 완성차량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5. 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7.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8.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

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다.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라. 표준규격서의 작성

마.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 금지·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2. 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업무 중 완성차량검사 업무(철도차량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2.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 중 제60조의2에 따른 자격부여신청 접수, 자격증명서 발급 및 자격의 5관리 업무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

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과 실·과		공원녹지과
입 안 자	과 장	강 용 구
	담 당	서 춘 희
	담 당 자	이 혜 진 (480-5557)